

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고 제2024- 39호

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(의회운영위원회 제안)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4년 8월 28일

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 안 이 유

-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‘매년 6월 두 번째 월요일’에서 ‘매년 6월 첫 번째 월요일’로 조정하고자 함.

2. 주 요 내 용

-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조정(안 제4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(월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(참조: 부평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실, 전화 032-509-7022 / 팩스 032-509-764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· 주소 · 성명 · 연락처			

4. 공청회 개최계획: 없음

5. 붙임

가.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나. 현행 조례 1부

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본문 중 “두 번째”를 “첫 번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집회)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에 집회한다.	제4조(집회) ----- -----. ----- -----.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<u>두</u> <u>번째</u> 월요일에 집회한다. 다 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 로 9월·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.	1. ----- <u>첫</u> <u>번째</u> -----. ----- ----- ----- --.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발췌사항

지방자치법

제53조(정례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54조(임시회)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.
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6조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 ① 지방의회의 개회·휴회·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.

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현행조례

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, 제54조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6. 8. 4, 2008. 2. 22, 2017. 1. 2., 2020. 12. 28., 2022. 3. 7.>

제2조(개최)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. <개정 2022. 3. 7.>

제3조(연간 회의 총일수 및 회기) ①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22, 2017. 1. 2., 2020. 12. 28. >

②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.

<본조신설 2006. 8. 4, 개정 2016. 4. 4. 2020. 12. 28.>

③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 3. 7.>

제4조(집회)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.<개정 2006. 8. 4, 2008. 2. 22, 2016. 4. 4, 2017. 1. 2., 2020. 12. 21., 2022. 3. 7.>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두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·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.<개정 2000. 9. 25, 2016. 4. 4., 2020. 12. 28.>

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세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. <개정 2007.11.9, 2016. 4. 4., 2020. 12. 28.>

제5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
[조문 신설 2022. 3. 7.]

제6조(심의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과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<개정 2000. 9. 25, 2017. 1. 2., 2020. 12. 28., 2022. 3. 7.>

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<개정 2000. 9. 25, 2017. 1. 2., 2020. 12. 28., 2022. 3. 7.>

제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·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20. 12. 28.>